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 8. 9 선고 2022가단122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병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나경광

피 고 1. B

2. C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훈 담당변호사 곽현준, 김용표, 김

정웅, 문종욱, 정지웅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새천년 변호사 윤영식

변 론 종 결 2023. 7. 12.

판 결 선 고 2023. 8. 9.

주 문

1.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E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 사이에 2019. 6. 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 사이에 2020. 7. 13. 체결된 근저당권계약일부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일부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와 2020. 7. 13. 접수 제25780호로 마친 근저당권지분일부이전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법인에 대하여 2017. 9. 1.자 전기, 통신, 소방감리용역에 기한 용역비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소외 법인은 2019. 6.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외 4인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피고 B 지분에 관하여 2020. 7. 13. 피고 회사 앞으로 이 사건 일부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부기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소외 법인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일부양도계약의 취소와 이 사건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먼저 피고 회사에 대한 소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수익자와 사이에서 한 법률행위여야 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일부양도계약은 수익자인 피고 B와 전득자인 피고 회사 사이의 법률행위로서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또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므로 위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 등 참조), 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나머지 소 역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결국 피고 회사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2. 10. 6. 주식회사 F에게 원고의 소외 법인에 위 용역비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연주

별지